

발굴조사 보고서 등의 제출기준(제27조 관련)

조사기준	보고서	제출기간	제출자
1. 표본·시굴조사	약식 보고서	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	발굴허가를 받은 자
2. 정밀발굴조사	약식 보고서	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	발굴허가를 받은 자
	발굴조사보고서	발굴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	매장유산 조사기관

※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보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.

※ 표본조사·시굴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(조사기록, 출토유물 등)를 정밀발굴 조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정밀발굴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.